

제2022-77호 2022년 8월 2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306호	도로구간(중속구간) 설정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2-307호	소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제2022-307호)	3
○ 여수시 고시	제2022-30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2-3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7
○ 여수시 고시	제2022-3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8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10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관문동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
○ 여수시 공고	제2022-2112호	도로지정 변경공고(화양면 이천리 90번지)	14
○ 여수시 공고	제2022-211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수 돌산 근생시설 신축공사)	16
○ 여수시 공고	제2022-2123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2-2124호	도로지정공고(화양면 나진리 273-1번지 외 2필지)	27
○ 여수시 공고	제2022-212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22-2128호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22-2129호	도로지정공고(소라면 덕양리 630-1번지)	38
○ 여수시 공고	제2022-213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2-2137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행정처분(허기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50
○ 여수시 공고	제2022-2142호	도로지정 변경공고(소라면 덕양리 676번지)	54
○ 여수시 공고	제2022-2144호	도로지정 변경공고(화양면 안포리 신842번지 외 3필지)	56
○ 여수시 공고	제2022-214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8
○ 여수시 공고	제2022-2148호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 여수시 공고	제2022-215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7
○ 여수시 공고	제2022-21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70
○ 여수시 공고	제2022-2156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71
○ 여수시 공고	제2022-2157호	도로지정 공고(문수동 567)	72
○ 여수시 공고	제2022-2160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74
○ 여수시 공고	제2022-21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여수시 중흥동 1055-28 신축공사)	76
○ 여수시 공고	제2022-2170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 (주)코인즈	86
○ 여수시 공고	제2022-2171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87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구간(종속구간)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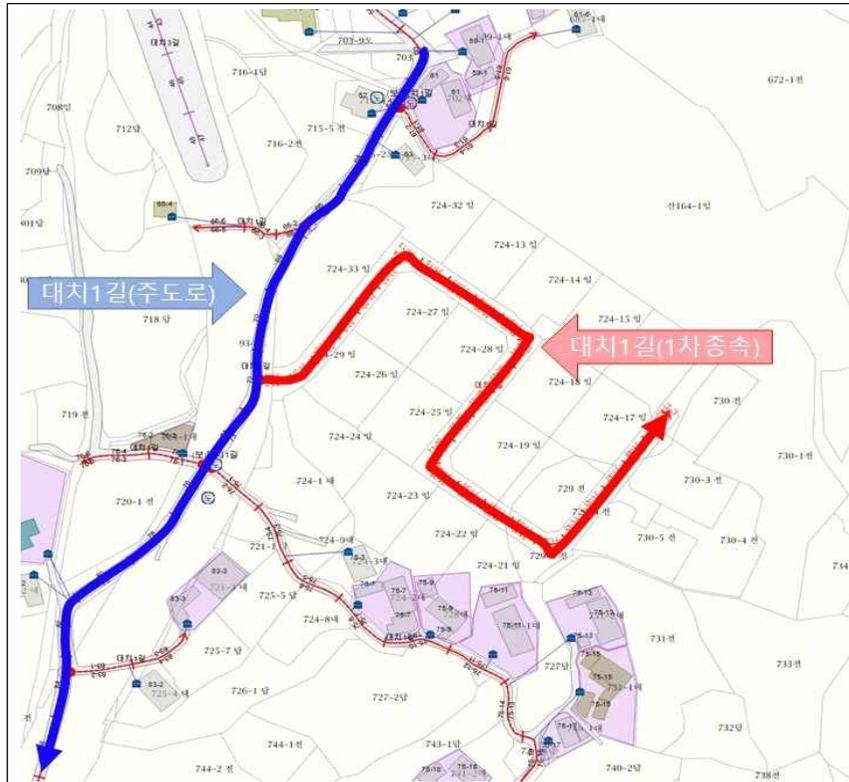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고 시 일 : 2022년 7월 28일
2. 고시방법 : 시보, 여수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대치1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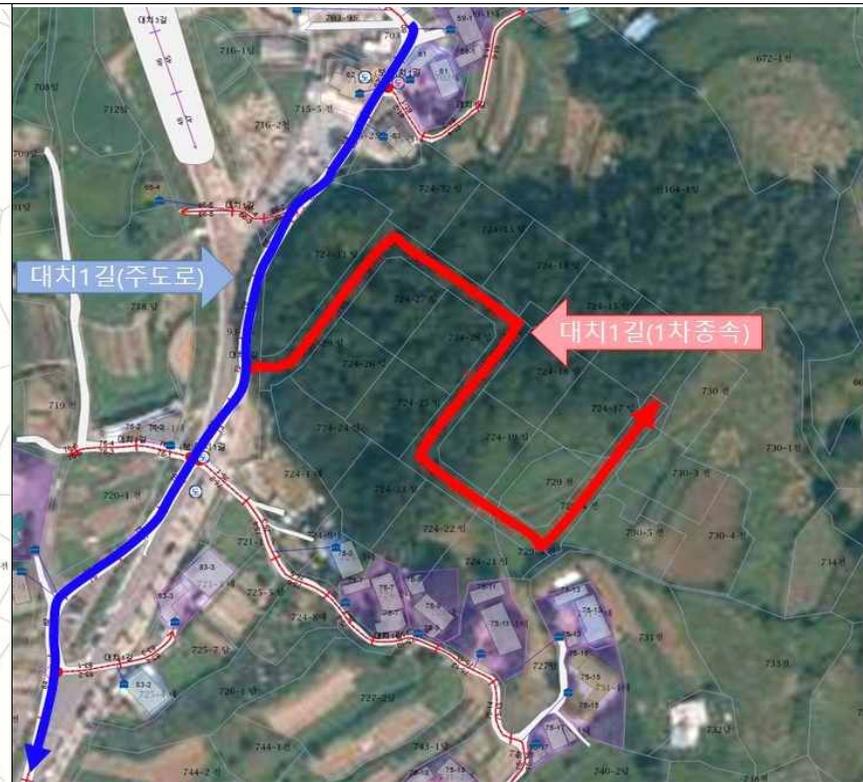
붙임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조서 및 현황도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 유형	구분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효력발생일	설정 사유
				시작지점	끝 지점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여수시 여서동	대치1길	길	신규	여서동 934	여서동 724-31	71-1	71-54	261	7	10	2022.7.28.	1차 종속구간 신규 설정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항공영상 사진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2-307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12-11	죽림천	전남 여수시 미평3길 1*-7	심*순	여수시 미평동 912-18번지	5m ²	단독주택 진출입로 설치(교량)	2012.12. 1. ~ 2022.12.31.	당초
					여수시 미평동 912-18번지	5m ²	단독주택 진출입로 설치(교량)	2012.12. 1. ~ 2027.12.31.	변경
2	2017-5	가산천	전남 여수시 무선로 **, 1**동 10**호	김*숙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00-1	27m ²	소매점 진출입 위한 교량 설치	2017. 9.12. ~ 2022.12.31.	당초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00-1	27m ²	소매점 진출입 위한 교량 설치	2017. 9.12. ~ 2027.12.31.	변경
2	2017-8	가산천	전남 여수시 무선로 **, 1**동 10**호	김*숙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13	13m ²	교량 가각부 확장	2017.12.21. ~ 2022.12.21.	당초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013	13m ²	교량 가각부 확장	2017.12.21. ~ 2027.12.21.	변경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29.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7길 163(묘도동)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 철거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4길 3(학동)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673, 672-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9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646-5, 644-2, 645-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7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신흥리 1113-1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여순로 395-9	20220729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당시의 행정명칭 조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신흥리 1113-7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여순로 395-3	20220729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당시의 행정명칭 조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신흥리 1113-9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여순로 395-5	20220729	20091013	여수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당시의 행정명칭 조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신흥리 1113-10, 1112-5	전라남도 여수시 읍촌면 산곡길 14-11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650-8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1길 50-4(웅천동)	20220729	2011020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353-10, 353-1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30-11	20220729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55-1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24	202207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여수시 고시 제2022 - 30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승인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2-32 (22. 8. 1.)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49-6번지 일원	708	돌산읍 작금항 선착장 연장공사	2022. 8. 1. ~ 2052. 7. 31.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22-33 (22. 8. 1.)	여수시 울촌면 봉전리 186-12번지 일원	244	울촌면 봉전항 물양장 설치공사				
2022-34 (22. 8. 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086-8번지 일원	223	소라면 복산5리 섬달천 선착장 연장공사				

2022. 8. 1.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2 - 3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2-31 (‘22. 7. 25.)	‘22. 8. 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남중동)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해상교량 안전과)	‘22. 8.	‘27. 3.	여수시 화정면 개도라-제도라- 백야리 일원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2공구)

2022. 8. 2.

여 수 시 장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

여 수 시 장 (인)

1. 사업개요

- 사업명 :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사업규모 : L=94m, B=8.0m (770m²)
- 사업기간 : 2019. 8. 14. ~2023. 12. 31.

2. 열람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16.(15일간)

3.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 해당사항 없음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m ²)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7)로 문의바랍니다.

별지1 - 보상비 산정조서(토지)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작성자: 도로과 민원기 (인)						
연번	수용토지의 표시					편입내역		감정평가 내역				보상액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지번	면적 (㎡)			단가	금액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공부	현황			단가	금액										
합계																			
1	동산동	565	2,311	구거	구거	565-3	21							국토교통부					
2	동산동	485-6	1,198	도로	도로	485-9	1							국토교통부					
3	동산동	380	761	도로	도로		42							여수시					
4-1	동산동	231	163	대	대	231-3	62중 1/2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1**동 11**호 (응천동, 웅천**아파트)	설*자						
4-2	동산동	231	163	대	대	231-3	62중 1/2					여수시 여서2로 20, *동 2**호 (여서동, **아파트)	김*준						
5	동산동	229	208	대	대	229-1	54					여수시 관문서8길 * (동산동)	박*심						
6	동산동	228	238	대	대	228-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 ** (홍은동)	박*희	주식회사 하나은행	여수시 통제영4길 3	근저당	2016.9.7.		
7	관문동	991	116	대	대	991-1	43					여수시 관문서8길 ***, 3층 (관문동)	조*훈	동여수 새마을금고	여수시 미순신광장로 215	근저당	2018.12.31.		
8	관문동	990	86	대	대	990-1	53					여수시 관문서8길 * (관문동)	김*호	종교새마을금고	여수시 미순신광장로 215	근저당	2012.4.9, 2015.7.9.		
9	관문동	976	1,079	도로	도로	976-5	29							국토교통부					
9-1	관문동	976	1,079	도로	도로	976-8	88							국토교통부					
10	관문동	974	136	대	대	974-1	14					여수시 관문서8길 *** (관문동)	이*자						
11	관문동	973	370	대	대	973-1	122					여수시 관문서8길 *** (관문동)	안*식	여수시 (허가민원과)	여수시 시청로 1	압류	2005.9.14.		
12	관문동	969	278	대	대	969-1	15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 (쌍촌 동)	재단법인광주 ****유지재단						

별지1 - 보상비 산정조서(토지)

[관문동 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작성자: 도로과 민원기 (인)				
연번	수용토지의 표시					편입내역		감정평가 내역				보상액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공부	현황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3-1	관문동	968	170	대	대	968-2	45중 1/2							여수시 동문로 ** (관문동)	임+일	성동세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97	압류	2002.5.1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가압류	2004.5.27.
																순천시	순천시 장영로 30	압류	2006.12.19.
																임+업	미천시 마장면 오천로 2+번길 6+**	근저당	2001.7.9.
																산한카드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00, 에이동(을지로2가,파인에비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20.7.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20.12.29.
13-2	관문동	968	170	대	대	968-2	45중 1/2							여수시 국동 10길** (국동)	박+연				
14	관문동	968-1	45	대	대	968-3	26								여수시				
15	관문동	966	60	대	대	966-1	8								여수시				
16	관문동	965-2	3	대	대	965-2	3								여수시				
17	관문동	964-2	116	대	대	964-3	1							여수시 관문서7길 *** (관문동)	김+현				
18-1	관문동	965	237	대	대	965-3	1중1/3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21길 **, 5**동 11**호(목동, 신내대림아파트)	김+철				
18-2	관문동	965	237	대	대	965-3	1중1/3							서울시 서초구 서문로1**, 1**동20**호(서초동, 롯데캐슬아파트)	김+석				
18-3	관문동	965	237	대	대	965-3	1중1/3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37+**, 2**동 2**호(잠원동, 신반포+차아파트)	김+완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90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2. 7. 28.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90번지
2. 도로면적: 585.6m²
3. 도로 길이 및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당초	계	72	6	58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계	72	6	585.6	
당초	화양면 이천리 90	72	6	586	
변경	화양면 이천리 90	72	6	585.6	

※ 도로지정공고(당초): 제2022-957호(2022. 3. 28.)

- 5 관련도서 : 별첨 참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 돌산 근생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대호에너지(주)

다. 시 공 자 : 남경종합건설(주)

라. 감 리 자 : (주)정원 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03-2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4,000㎡

3) 연 면 적 : 999.44㎡

4)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1동(근린생활시설)

5) 공사기간 : 2022. 3. 30. ~ 2022. 12. 31.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7) 순공사비 : 2,497,000,000원(VAT 별도)

8) 안전점검 비용 : 4,8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2. 1. 25.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2회)
-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860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8. 3.(수) 09:00 ~ 8. 5.(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8. 9.(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8. 10.(수) 14: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8. 11.(목)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29.

여수시장

1. 도로의 종류 : 시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대로3류42, 웅천~소호 간 도로(L=1,154m, B=22.5~26.0m)
3. 사용개시구간 : 여수시 웅천동 1758(도) ~ 소호동 1220-1(도)
4. 주요 통과지 : 여수시 웅천동 ~ 소호동
5. 사용 개시일 : 2022. 7. 30.
6. 도면열람장소 : 여수시 도로과
7. 지 형 도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73-1번지 외 2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 7. .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73-1번지 외 2필지
2. 도로 면적: 105m²
3. 도로 길이 및 폭: 현황도에 의함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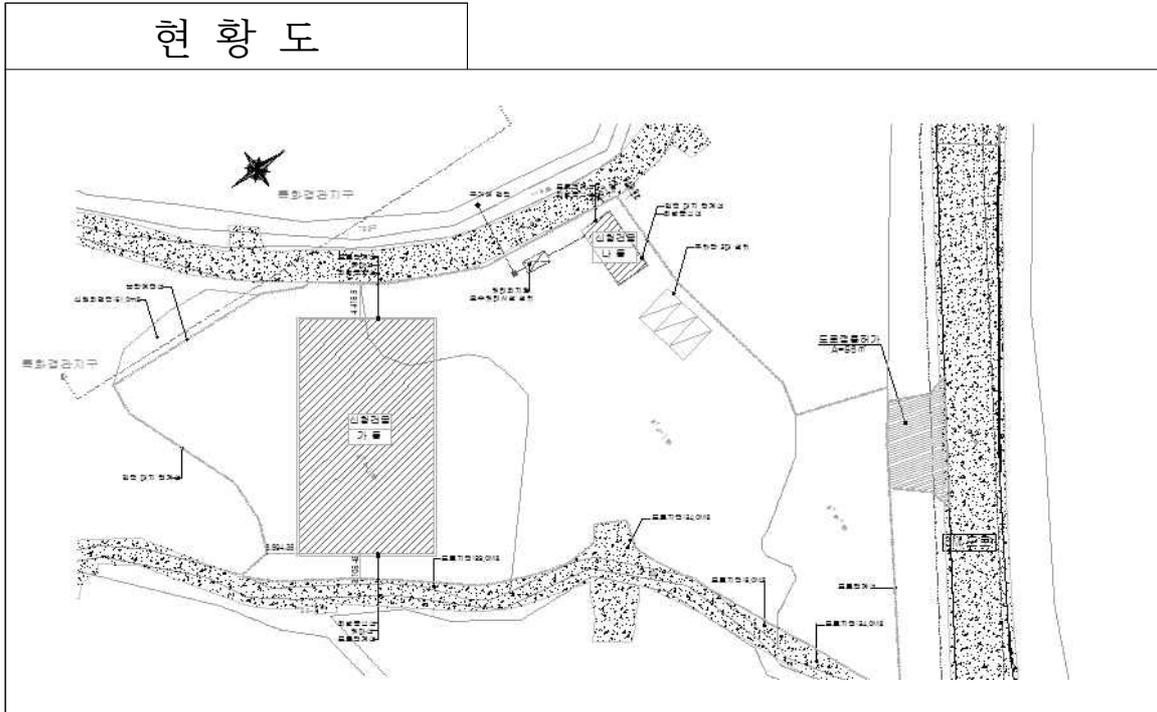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3,175	105	
화양면 나진리	273-1	답	1,316	29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74-1	답	1,398	42	
	275-7	답	461	34	

5. 관련도서: 별첨(현황도) 참조

6.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458	마을어업	-	12.00	화양 이천	2022.08.27. 2032.08.26.	-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이천어촌계	10182 재개발
10459	마을어업	-	60.67	화양 장수	2022.08.27. 2032.08.26.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장문어촌계	10183 재개발 (12.33ha축소)
10460	마을어업	-	14.67	화정 여자	2022.08.27. 2032.08.26.	-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여자어촌계	10184 재개발 (0.33ha축소)
10461	마을어업	-	10.00	신월 넘노	2022.08.27. 2032.08.26.	-	여수시 신월동	신월어촌계	10185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2. 07.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추진하는 규제개혁대상 조례에 포함되어 진입규제 조문 개정 요구(위탁자 선정시 공개경쟁 원칙 준수)
- 공정위의 조례 개선요구 수용 및 개정으로 법인·단체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사진산업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

2. 주요 내용

- 사진산업 위탁자 선정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 (제5조제2항)
 - (제3항 신설)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원칙 준수,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름

3. 입법 예고기간 : 2022. 7. 29. ~ 8. 18.(20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문화예술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E-Mail : ozsarang@korea.kr
- 전 화 : 061-659-4739
- F A X : 061-659-585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등) ① ----- ② ----- ③ <신 설>	제5조(사업 등) ① ----- ② ----- ③ <u>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u>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21.05.18 조례 제16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 종사자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
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진 산업 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1. 5. 18.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30-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 7. 28.

여 수 시 장

1. 위 치 : 소라면 덕양리 630-1번지
2. 도로면적 : 5m²
3. 도로길이 : 9.5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552	5	
	소라면 덕양리	630-1	도로	552	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여수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공사 내역

가. 사 업 명 : 여수시 남산동 돌산대교 매달기 중압 배관공사

나. 발 주 자 : 대화도시가스(주)

다. 시 공 자 : 두성건설(주)

라. 공사개요

1) 위 치 : 돌산대교(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일원)

2) 구 조 : 강관비계

3) 규 모 : 작업발판 1층 / 비계 설치 높이 H = 2.5m

4) 공사기간 : 2022. 8. 22. ~ 10. 31.

5) 공 사 비 : 372,690,000원(VAT 포함)

6)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VAT 포함)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가설구조물(브라켓 비계)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081호

나. 결정방법

-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7. 29.(금) ~ 8. 3.(수)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부가세 포함 금액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8. 5.(금) 개별 통보(우선순위 2개 업체만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2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8. 10.(수)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서식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8. 11.(목) 10:00 ~ 16: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과업범위의 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내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13, 김승미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토목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40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40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0%;">1억원 이상</th> <th style="width: 2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th> <th style="width: 20%;">5천만원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점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body> </table>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구 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률	30%	20%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 70점, A기관 : 65점, B기관 : 65점, D기관 : 60점
-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절대값이 같을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에 우선순위 부여.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3. 배점기준

구분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비고
사업수행능력	30점	20점	10점	배점 = 총계 X 배점률
입찰가격	70점	80점	9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등)하고자 청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7. 29.

여 수 시 장 (인)

1.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7. 29. ~ 8. 12.(15일간)
3. 처분원인 :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4. 처분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5.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6. 대 상 자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개소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허가(신고)	반송사유
1	석창주유소	대표	좌수영로 984(봉계동)	'22.8.24. 14:00	폐수	수취인불명
2	울촌목욕탕	대표	울촌면 동산개길 8-1	'22.8.24. 15:00	대기	수취인불명
3	세미네츄럴	대표	망양로 482-7(오천동)	'22.8.24. 16:00	폐수	이사감
4	(주)이레	대표	삼동로 27-6(주삼동)	'22.8.25. 15:00	폐수	이사감
5	(주)대창기계공업	대표	여수산단1로 342-30(화치동)	'22.8.25. 16:00	대기,폐수	수취인불명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 2022. 8. 24. ~ 8. 25.

나.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다. 주 재 자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

※ 청문주재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당일 새로 지정된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환경감시팀(061-659-28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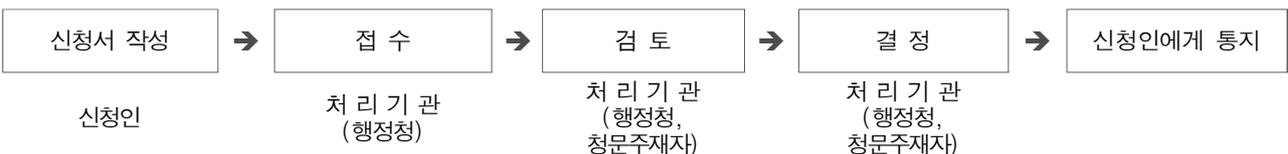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76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공고합니다.

2022. 8. 1.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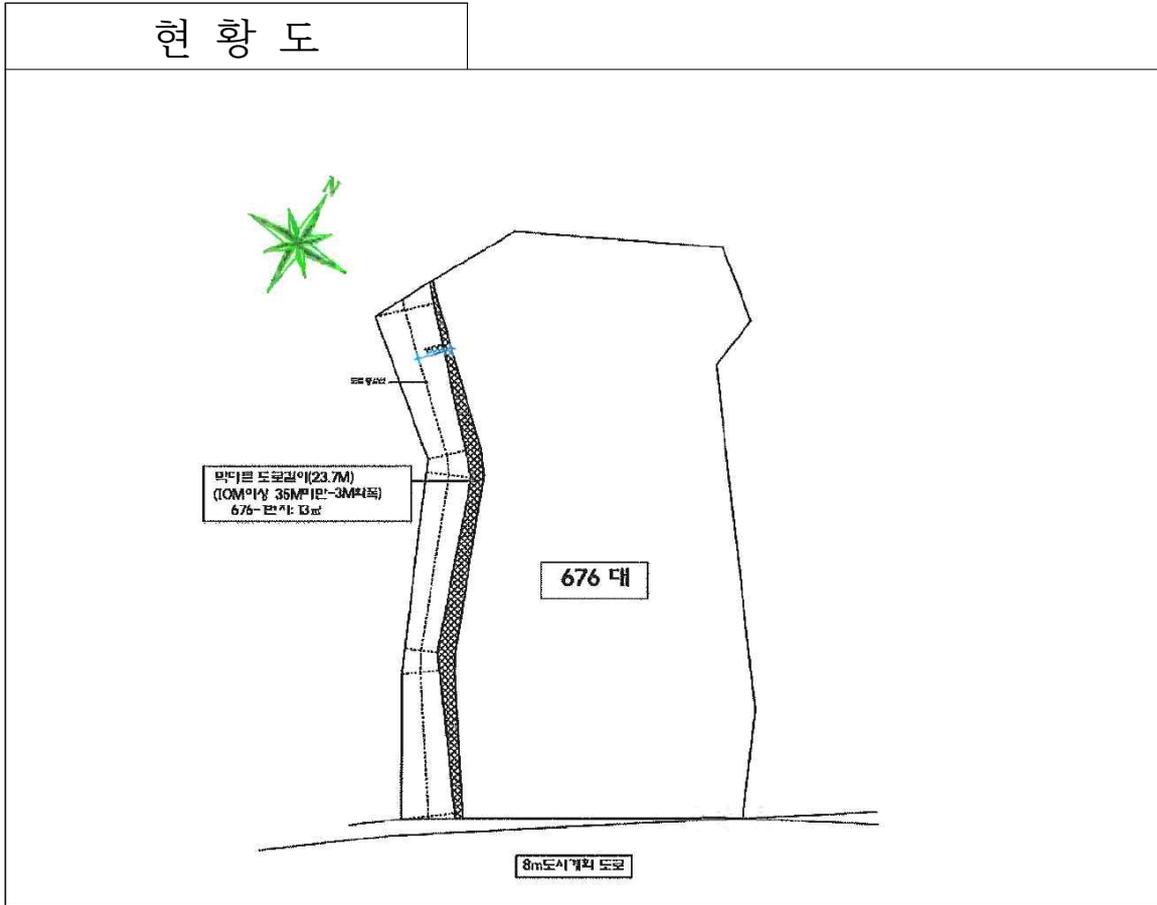
1. 위 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76번지
2. 도로면적: 13m²
3. 도로 길이 및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324	13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계			324	13	
당초	소라면 덕양리	676	대	324	13	
변경	소라면 덕양리	676	대	324	13	

※ 도로지정공고(당초): 제2022-863호(2022. 3. 18.)

- 5 관련도서 : 별첨 참조

[별 첨]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42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2.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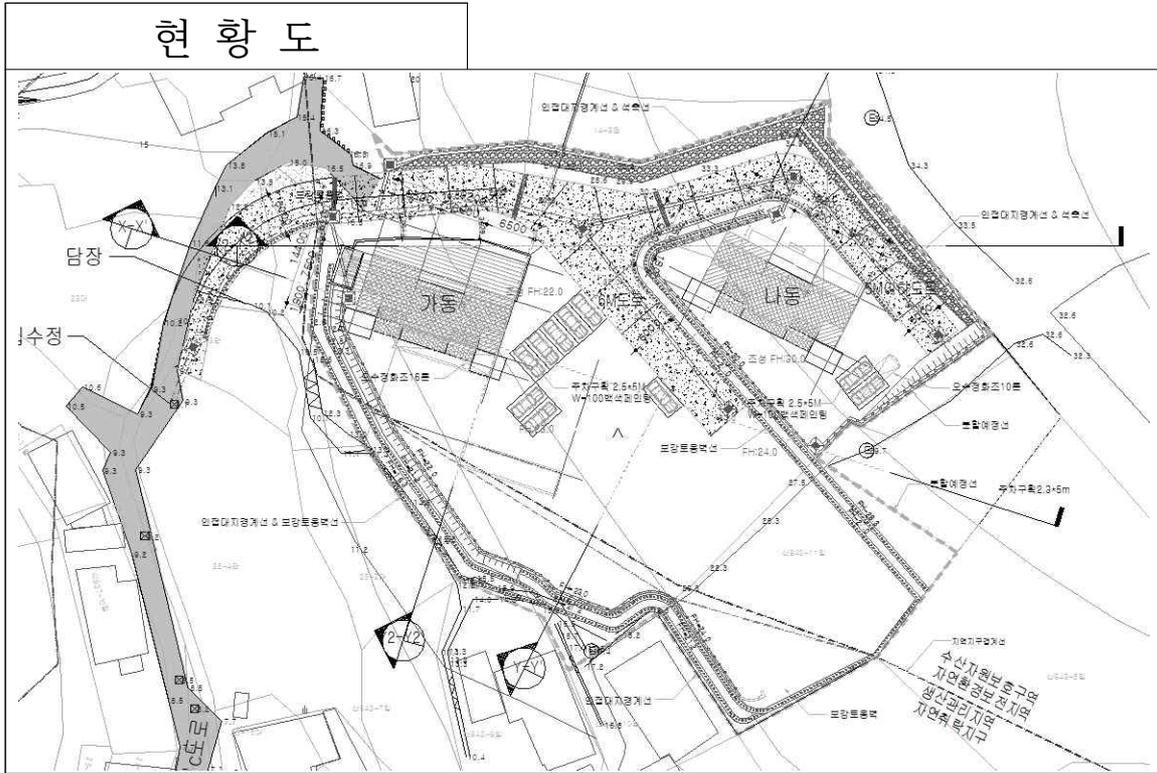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 842번지 외 3필지
2. 도로면적: 891m²
3. 도로 길이 및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4,568	1,13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계			4,676	891	
당초	화양면 안포리	산842	임	3,107	845	
		24-2	전	714	185	
		14-1	전	543	2	
		25-3	답	222	100	
변경	화양면 안포리	산842	임	3,107	439	
		24-2	전	714	150	
		14-1	전	543	193	
		25	답	90	51	
		25-3	답	222	58	

※ 도로지정공고(당초): 제2022-119호(2022. 1. 12.)

5 관련도서 : 별첨 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



1.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15.(15일)
2.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9**1	한국상용8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2	포터II (PORTER II)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3	트 라 고 엑 시 언 트 (TRAGO XCIENT)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4	한국상용 4.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5	동양7.5톤 극플러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6	트라고(TRAGO)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7	한국상용 4.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8	대우25톤장축 카고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9	트 라 고 엑 시 언 트 (TRAGO XCIENT)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0	한국쓰리축 6.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2	한국상용 7.5톤카고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3	현대16톤초장축카고 트럭(터보)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4	한국쓰리축 7.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9**5	한국상용 7.5톤트럭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3	스카니아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1	스카니아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6**5	현대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9**4	FH 트랙터	(주)제***	206211-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4. 의견제출 및 문의

- 가.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라 행정처분(유가보조금 반환) 사전통지하오니
- 나. 공고대상자는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제출 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 기준을 사업장 소재지로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든 관내 소상공인에 혜택을 주고자 함
- 나.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자금 수요와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여수시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대출금리 3% → 5% 지원)

2. 주요내용

- 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거주지 제한 항목 삭제(안 제3조)
- 나.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대상 수정(안 제4조)
 - (별지 참고)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라남도과 동일
- 다. 이차보전 지원 이자율 수정(안 제5조)
 - 대출금리 지원 3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1. ~ 8. 22.(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번호 061-659-5816)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 업무담당자 : 지역경제과 유이지(youeasy12@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6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 견(사 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외대상)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 .</p> <p>②지원신청일 현재 사업자 및 종업원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p> <p>제5조(이차보전)①이차보전은 소 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u>3퍼센트</u> 이자율 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 -----.</p>	<p>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 .</p> <p>②<삭제></p> <p>제5조(이차보전)①----- ----- -----<u>5퍼센트</u>----- ----- -----.</p>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



1.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15.(15일)
2.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7**0	대우15.5톤 장축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1	한국쓰리축 6.5톤 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3	현대11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7	트라고(TRAGO)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8	대우19톤카고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2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터보)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3	한국상용6.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4	한국상용7.5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3	현대슈퍼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5	한국상용8톤트럭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4**0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4	대우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7	FM12 6X2 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8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9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3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6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7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0	Actros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1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2	스카니아트랙터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98바 5**3	TGX	(유)동***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133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4. 의견제출 및 문의

- 가.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라 행정처분(유가보조금 반환) 사전통지하오니
- 나. 공고대상자는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제출 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유가보조금 반환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



1. 공고기간 : 2022. 8. 1. ~ 2022. 8. 15.(15일)
2.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의거, 불법 등록 후 직권 말소 등록기간까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반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위반 사항
전남80바 7**2	대우4.5톤극초장축 카고트럭	(유)지***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0, 2층 207호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전남80바 7**5	한국상용4.5톤트럭	(유)지***	20621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0, 2층 207호	수 취 인 불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급

4. 의견제출 및 문의

- 가. 불법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 따라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반환) 사전통지하오니
- 나. 공고대상자는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시 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제출 시,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함)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교통과(☎061-659-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흥익이앤지 (임대철)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상암로 169-2, 2층(호명동)
3. 법인 등록번호 : 700519-1574614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2-사-09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022. 08. 1.

2022년 8월 1일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문수동 567번지 외 2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2. 8. 2.

여 수 시 장

1. 위 치 : 문수동 567번지 외2필지(568, 569-5)
2. 도로면적 : 152m²
3. 도로길이 : 30.3m
4. 도 로 폭 : 1 ~ 6.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934	152	
	문수동	567	전	1,408	1	
		568	임야	447	72	
		569-5	답	79	79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설치물)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456-11번지 일원	화정면 여자리 마파선착장 정비 및 파라펫 설치공사	2,280㎡ (파제제)	승인일로부터 30년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530번지 일원	화정면 여자리 돌레길 조성사업	132.05㎡ (데크로드)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 공람기간: 2022. 8. 1. ~ 8. 19.(19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8. 1. ~ 8. 19.(19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해양항만레저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alstjd12@korea.kr)
- 담당자: 행정9급 김민성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항만레저

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이비이여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 이비이여수(주)

다. 시 공 자 : 한화시스템(주)

라. 감 리 자 : 제일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055-28번지 외 1필지

2) 대지면적 : 6,159㎡

3) 연 면 적 : 1,829.89㎡

4)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1동, 지상1층/1동,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 시설)

5) 공사기간 : 2022. 7. 25. ~ 2023. 12. 31.

※ 주요공정계획서 별도 첨부

7) 순공사비 : 34,030,000,000원(VAT 포함)

8) 안전점검 비용 : 6,7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0. 8. 28.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흠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2-1860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8. 2.(화) 09:00 ~ 8. 8.(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6. 개찰일시 : 2022. 8. 9.(화)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2. 8. 9.(화) 14:00 ~ 16:00까지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 8. 10.(수)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input type="checkbox"/>] 종합분야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코인즈 (최명환)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3로 297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30581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가스난방공사업	여수-22-하-02	• 난방공사(제1종)	2022. 8. 2.

2022년 8월 2일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2.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설치물)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961-11번지 일원	삼산면 동도 유촌마을 선착장 정비공사	425㎡ (선착장)	승인일로부터 30년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1144-11번지 일원	삼산면 동도 죽촌항 정비공사	2,395㎡ (선착장, 부잔교 이설 등)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205-2번지 일원	삼산면 진막항 방파제 보강공사	152㎡ (방파제)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961-3번지 일원	삼산면 유촌항 물양장 확장공사	245㎡ (물양장)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 공람기간: 2022. 8. 3. ~ 8. 22.(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8. 3. ~ 8. 22.(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출처: 해양항만레저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alstjd12@korea.kr)
- 담당자: 행정9급 김민성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항만레저

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